

#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접수 안내

## 1. 신청유형

구분	신청등급	발급 될 자격증 급수
국가시험 응시자	1급	합격 → 1급, 불합격 → 2급
국가시험 미응시자	2급	2급

## 2. 자격증 신청자 구비서류

접수기간	서류준비자	구비서류	비고
<p>● 2차 서류</p> <p>2022년 02월 23일 (수) 까지</p>	<p>1급 국가시험 미응시자 (2급 신청자) &amp; 1급 국가시험 필기 불합격자</p>	<p>졸업증명서 1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90일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가능</li> <li>- 졸업예정증명서도 제출가능</li> </ul>
		<p>성적증명서 1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90일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가능</li> <li>- 졸업일 이전에 발급받은 성적증명서도 제출가능</li> </ul> <p>(단,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(필수 10 과목, 선택 4과목)이 성적증명서에서 확인되어야 함.)</p>
		<p>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1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10년도 입.편입자부터 적용 제출</li> <li>- 실습지도자/실습 기관/실습세미나 기간 /실습지도 교수님 날인(서명) 여부 확인 요망</li> <li>- 확인서 발급 일자(실습 기관/실습지도 교수) 기재 여부 확인 요망</li> </ul>
		<p>외국인(외국국적자) 추가 제출 서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외국인(재외국민인) 경우 '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' 또는 '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' 해당서류 1부</li> <li>- 결격사유조회 서류 1부</li> <li>: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, 공증받아 제출해야 함</li> <li>: 국가별 제출서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가능</li> </ul>

### 3.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

▶ 2021년 제 1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예정자는 **학과사무실에 제출할 추가 서류 없음.**

▶ 졸업예정(학생) 중 2021년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예정자는 **응시자격서류제출을 개별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1급 국가시험합격예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(합격예정자 발표일에 확인 후 2차 서류 제출요망)**

▶ 응시자격서류제출 이후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<1급 자격증이 교부> 됩니다.